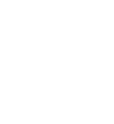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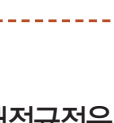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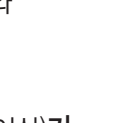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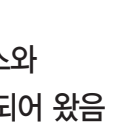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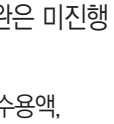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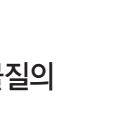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란?
7개 화학업종(원유정제처리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설비와 그 외 업종의
사업장에서 PSM 대상 유해·위험물질 시행령(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개정 배경


오래된 제도의
현행화 필요

'96년 PSM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간 산업·기술이 변화하였으나 PSM 대상물질의
규정량은 재검토 되지 않음*

* '14년 PSM 대상물질 30종이 신규 추가되었으나 전체(총 51종)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은 미진행

☞ 이에 따라 암모니아('96년 도입) 규정량(200,000kg)이 암모니아수(암모니아를 일부 함유한 수용액,
'14년 도입) 규정량(20,000kg)보다 크다는 문제점 등이 존재


산업계의
요구 수용

0.1MPa 미만(저압)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반응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와
별도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규정량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도시가스[NG(Natural Gas), 메탄이 주성분]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반응공정 원료와
위험이 낮은 연료용으로 각각 사용되며, 용도별로 별도의 규정량 설정 요구


관련 규칙과의
관계성

산, 알칼리 등 부식성 물질의 규정농도(불산 1% 이상, 염산·황산·암모니아수 10% 이상)가
다른 기준***과 상이하다는 의견도 함께 검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7조 및 제255조 관련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의 규정농도 : 불산 60% 이상, 염산·황산 20% 이상, 암모니아수 40% 이상

적용 시기


적용 시기

제43조·제45조([별표 13]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 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 ②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신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고의성 없는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비교표

순번	PSM 대상물질명	규정량(kg)	
		현행	개정
1	인화성 가스	5,000(저장: 200,000)	5,000(저장: 200,000)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취급 : 5,000	취급 : 50,000
2	인화성 액체	5,000(저장: 200,000)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4	포스겐	75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7	염소	20,000	1,5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11	시아노화수소	1,000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14	황화수소	1,000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18	수소	50,000	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20	포스핀	50	500
21	실란(Silane)	50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50,000(농도 동일)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농도 동일)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10,000(농도 동일)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29	염화 벤질	750,000	2,0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39	불소	20,000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42	니트로 셀룰로우스(질소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48	불산	1,000(중량 1% 이상)	10,000(중량 10% 이상)
49	염산	20,000(중량 10% 이상)	20,000(중량 20% 이상)
50	황산	20,000(중량 10% 이상)	20,000(중량 20% 이상)
51	암모니아수	20,000(중량 10% 이상)	50,000(중량 20% 이상)

*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0.1MPa미만) 연료용으로 사용 시 취급 규정량만 완화